

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 제2008 - 150호

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중인 “축산물의 표시기준(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7-23호, '07.12.17)”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8년 9월 17일
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

축산물의 표시기준개정(안) 입안예고

1. 개정취지

-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새롭게 대두되는 사항에 대하여 국제표시기준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고,
- 현행 고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과 동시에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개정내용

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표시기준 신설

-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설(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, '08.5.9) 반영

비타민 및 무기질 영양성분 표시 확대

- 조제유류 이외에도 [표2]영양소기준치표상의 항목을 모두 표시 가능토록 함

□ 조제유류의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보완

- 조제유류의 경우 영양소기준치 미설정 영양소는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생략하고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만 표시 가능토록 함
- ※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검역원 홈페이지(www.nvrqs.go.kr) 참고

3.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제출

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. 10. 7.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(참조 : 축산물안전과, 전화: 031-467-1968, 4388, 전송: 031-467-197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(<http://www.nvrqs.go.kr>)를 참고하거나 축산물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